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자산운용지침
『 Investment Policy Statement 』

2023. 3.

KBIZ 중소기업중앙회

목 차

1. 개 요	1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2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2
4. 자산운용체계	3
5. 자금수지 분석	7
6.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8
7. 자산배분	9
8. 리스크관리	11
9. 내부운용 및 위탁운용	15
10. 성과평가	17
11. 감사 및 공시	19
12. 의결권 행사	19
13. 자산운용담당자 행위준칙	20

1 개요

1.1 지침의 개요

본 지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공제”라 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규정한다.

본 지침은 중앙회가 작성하고,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지침의 내용은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지침은 공제의 자산운용 과정 전반을 규율하는 기준으로 현행 자산운용 관련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공제 자산운용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준거가 되고 자산운용 관련 조직 및 구성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의 허용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다.

1.2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공제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산운용 정책, 목표,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의 기준 등을 제시한다.

본 지침은 내부관리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중앙회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본 지침은 공제의 지배구조 등 내부 변화에 관계없이 자산운용의 일관성 및 독립성을 유지한다.

2 자산운용 관련 법규

2.1 관련 법령

공제의 자산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으며, 관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제정한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2 관련 내부규정

공제의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내부규정으로는 「자산운용규정」, 「리스크관리규정」과 「자산운용 업무처리요령」, 「리스크관리요령」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3 자산운용 목적 및 원칙

3.1 자산운용 목적

공제의 자산운용은 법령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3.2 자산운용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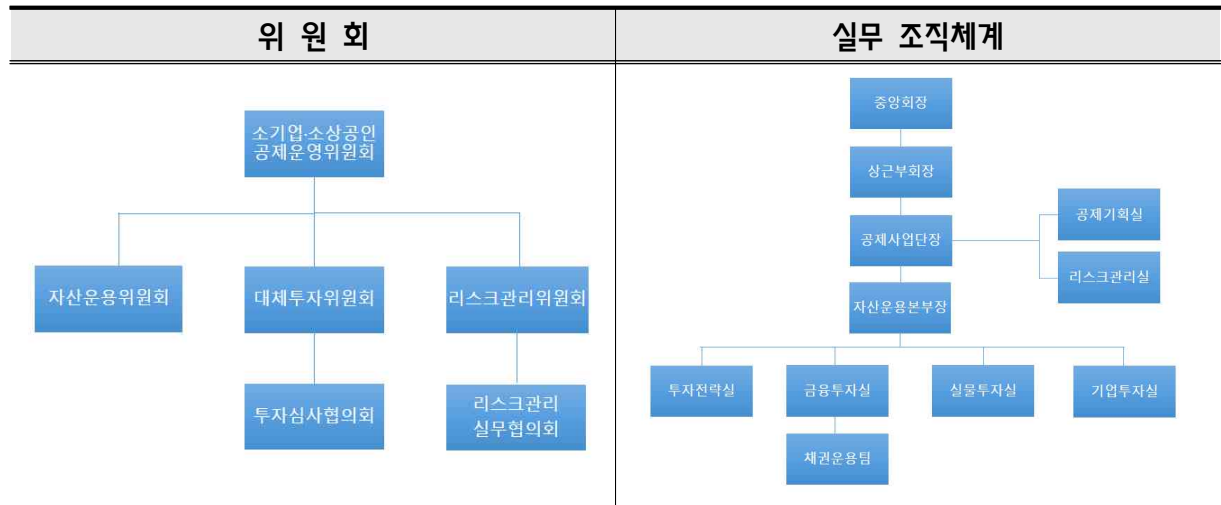
중앙회는 자산운용을 수행함에 있어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항상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여 공제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중앙회는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할 수 있다.

4 자산운용체계

4.1 자산운용 의사결정체계

공제의 자산운용은 자산운용계획에 의거, 중앙회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하며, 투자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체투자의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대체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한다.



4.2 자산운용 조직 및 역할

-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중앙회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공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공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변경 및 연간 자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공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위원회

- 자산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공제사업단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정책 방향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연간/분기 자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전략적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 기준이율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 환헤지지침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3) 대체투자위원회

- 대체투자위원회는 위원장인 자산운용본부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며 대체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풀(실물/기업/법/회계)을 운영한다.
- 대체투자위원회는 신규 대체투자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대체투자 정책에 관한 사항
 -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 기업 인수합병 및 기타 프로젝트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 투자대상을 특정하여 그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대체투자의 결정 및 변경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리스크관리위원회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외부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며 다음의 외부 전문가 풀(Pool)을 운영한다.
 - 공제·금융·보험·학술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리스크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인 이내
 - 대체투자 관련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실물(부동산, SOC, 자원 등), 기업(PE, 인수금융, 벤처 등) 및 법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인 이내
-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공제 자산운용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리스크관리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 리스크한도 설정·관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규정에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위기상황에 대비한 긴급대책의 수립
 -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리스크요인별 한도 초과에 관한 사항
 - 신용등급 기준을 하회한 투자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요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규정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투자심사협의회

- 투자심사협의회는 대체투자부서장, 리스크관리부서장, 투자전략부서장 및 실무자 9인(대체투자부서 5인, 리스크관리부서 3인, 투자전략부서 1인)으로 구성한다.
- 투자심사협의회는 개별 대체투자 대상 및 운용사 등에 대한 객관적 사전 검증,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투자 안정성 제고를 위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심의하는 회의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신규 투자안의 주요 리스크 사전 점검
 - 신규 투자안의 기대수익률 적정성
 - 기타 투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확인사항 점검
 -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 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국내 Blind 펀드 운용사의 건별모집 적용 판단

(6)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인 공제사업단장과 함께 리스크관리 부서장, 자산운용 관련 부서장, 투자전략부서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실무적인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협의한다.
 - 리스크관리 기본 계획 집행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 한도 관리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조치를 위임한 사항
 - 리스크관리규정 및 요령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자금수지 분석

5.1 자금수지 항목

자금수지 상의 수입항목은 공제부금, 자산운용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항목은 공제금 및 해약금 지급, 사업 및 관리비 등으로 구성된다.

5.2 운용자산 분류

공제의 운용자산은 다음과 같이 단기자금과 중장기자금으로 구분된다.

구 분		내 용
단기자금	현금성자금	·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 · 만기 1개월 미만의 자산운용 관련 입출금 계좌
	유동성자금	· 유동성을 일부 보충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자금 · 만기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자금
중장기자금		· 자산운용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1년 이상으로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금

5.3 적정 단기자금 규모 추정

연간 적정 단기자금의 규모는 유동성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월별 수입 및 지출을 CaR(Cashflow at Risk) 방법에 의거 추정한다.

다만 공제 자금수지 상 수입이 지출을 초과함에 따라 CaR 방법에 따른 적정 단기자금 추정 외에, 예상 월평균 지출을 과거 월별 현금흐름에 기초한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추정하여 파악한다.

6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6.1 목표수익률

목표수익률은 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설정하는 자산운용 수익률의 목표치로서 허용위험한도와 함께 자산배분의 근거로 활용된다.

목표수익률은 공제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산배분안이 충족시켜야 할 적정수익률이며, 중앙회는 자산운용 수익률이 ‘연간 공제 이율 + 사업비용 + 준비금 추가 적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6.2 허용위험한도

허용위험한도란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수익률 감소)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 미래의 위험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산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통계적 기준에 따라 허용위험한도를 산출하여 관리한다.

허용위험한도는 Shortfall Risk를 통해 측정하고,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향후 5년 동안의 Shortfall Risk(원금, 투자수익률이 0% 이하가 될 가능성) $\leq 1\%$

7 자산배분

7.1 자산배분 원칙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을 실행한다.

자산배분은 각 자산군의 기대수익률, 변동성 및 상관관계를 기초로 위험 대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평균-분산 최적화(Mean-Variance Optimization) 모형을 사용하며, 지속가능한 공제사업 영위를 위하여 중장기 재정추계 및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한다.

7.2 자산군 분류 및 운용대상

공제 운용자산의 자산군은 단기자산(현금성, 유동성), 중장기자산(채권, 주식, 대체투자)으로 분류하며, 자산군별로 다음의 상품을 운용한다.

구분	운용대상
단기자산	·MMDA, MMT, MMF, CMA, 정기예금, CD, CP, 단기사채, RP, 특정금전신탁, Wrap, 단기 은행채(통장식) 등
채권	·국공채, 통안채, 지방채, 공사채, 은행채, 여전채, 회사채, ABS, ABB, MBS,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구조화채권, KP물, CLO, PPN, 수익증권 등
주식	·주식, 수익증권, 투자일임자산, 주가연계증권, ETF 등
대체투자	·부동산, 사회간접자본, 사모투자, 기업구조조정투자, 벤처투자, 자원개발, 인수금융, PDF, 멀티에셋, 기타 채권과 주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대체투자 상품 등

7.3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적 자산배분(SAA, Strategic Asset Allocation)은 자산배분 모형을 통해 도출된 자산배분 대안 중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등을 고려하여 자산군별 배분 비중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적 자산배분은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및 연간 자산배분 계획을 통해 설정한다.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은 공제의 가입 및 부금 조성 등 장기 재정추계와 이에 적용되는 예상 공제이율 및 자산운용 수익률 등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연간 자산배분 계획은 시장상황과 포트폴리오 현황을 고려하여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 목표로서 자산군별 목표 비중과 허용범위 등을 결정한다.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은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며 매년 사업현황 및 운용실적을 점검하여 재수립하여야 한다.

중장기 자산배분 계획 및 2023년 자산배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 분	단기자산	채 권	주 식	대체투자	합 계
중장기(25년) 배분	3.0	48.5	15.2	33.3	100.0
'23년 계획	3.0	52.4	16.6	28.0	100.0

7.4 전술적 자산배분

전술적 자산배분(TAA, Tactical Asset Allocation)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으로부터 설정된 허용범위 내에서 자산군별 배분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운용본부는 연간 자산배분 계획에서 정한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범위 내에서 전술적으로 자산을 조정할 수 있다.

7.5 자산배분 조정

자산배분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해 각 자산군별 비중을 허용 범위 내로 관리하되,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공제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트폴리오를 조정(Rebalancing)할 수 있다.

자산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비중 및 한도 등에 관하여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8 리스크관리

8.1 리스크관리 원칙

공제의 리스크관리는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인식·측정·통제하며, 제반 운용업무가 운용원칙에 부합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산운용의 수익은 위험의 적정한 허용·관리를 통하여 창출되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측정하며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허용된 위험에 관해서는 수익 대비 과도하거나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리스크관리는 운용부서가 일차적으로 수행하며, 리스크관리 주관부서는 업무를 총괄하고 통제한다.

8.2 리스크 종류별 정의 및 관리방법

(1) 신용리스크

- 정 의 : 발행기관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등으로 투자금액의 회수가 어렵거나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 관리방법
 - 포트폴리오의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Basel II 표준법을 사용하여 99% 신뢰수준의 Credit VaR를 일간 단위로 산출·관리한다.
 - Credit VaR의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소진 정도를 점검하여 다음과 같이 위기단계를 구성 및 대응한다.

(2) 시장리스크

- 정 의 : 금리, 주가 및 환율 등 시장가격의 불리한 변화로 인하여 보유자산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 관리방법
 - 포트폴리오의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 Historical Simulation 방법을 사용하여 99% 신뢰수준의 Market VaR를 일간 단위로 산출·관리한다.
 - Market VaR의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소진 정도를 점검하여 다음과 같이 위기단계를 구성 및 대응한다.

(3) 유동성리스크

- 정 의 : 예상치 못한 자금유출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유자산의 해지 및 불리한 매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 관리방법 : 간 자산운용계획 수립시 적정 유동성 규모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단기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대비 월별 자금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계획 대비 집행률 수준에 따라 단계를 구성 및 대응한다.

(4) 운영리스크

- 정 의 :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의 오류, 직원의 실수 및 부정 등으로 인하여 공제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한다.
- 관리방법 : 운영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 상의 리스크를 인식·통제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부서는 주기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 리스크관리 주관부서는 누락, 위반 등 주요사항 발생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후 대책을 마련한다.

(5) 비상위험관리대책(Contingency Plan)

- 금융위기 등 예상치 못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위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위기 인식 및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 관리방법 : 비상위험관리대책은 자산운용 중에 발생하는 각종 위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음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8.3 리스크관리 조직 및 보고체계

리스크관리를 위한 조직은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 및 실무 조직으로 구성한다.

자산운용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회의는 매 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사전·사후점검 및 실무적인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회의는 안건 발생시마다 수시로 개최한다.

리스크관리 주관부서는 운용부서와 반드시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주관부서는 운용부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의 모니터링, 집계, 분석 등을 수행하며 이를 관리하고 적절히 통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사항을 공제사업단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 자산운용 현황 및 변동사항
- 제규정의 준수 여부 및 점검사항
- 보유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등 주요 신용위험 현황
- 기타 리스크관리 수행에 따른 중요한 사항

운용부서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서로서 수시로 제반 리스크를 검토하고 법 및 제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공제사업단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주관부서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공제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9.1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정책

자산운용의 형태는 운용 주체에 따라 직접운용(내부운용)과 위탁운용(외부운용)으로 구분하고, 자산운용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의 규모를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직접 및 위탁운용의 규모는 자금의 성격, 투자 전략의 다변화를 통한 위험 분산 효과, 운용기법, 수익률 및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시 위탁운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9.2 직접운용

중앙회는 공제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며, 자산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을 분산하여 투자한다.

9.3 위탁운용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자산운용 탄력성 제고, 운용능력 보완 및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위탁운용을 할 수 있다.

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운용사, 수탁사 및 평가사의 보고내용, 위탁상품의 투자내역, 수익률, 운용사 및 펀드매니저 동향 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운용사의 위탁계약 준수 여부 및 운용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 평가하여 해당 운용사에 위탁운용을 지속할 것인지 결정한다.

9.4 환매 및 재투자 기준

(1) 중도환매

- 운용상품이 만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및 유동성이 우려되는 경우이거나 다른 금융상품에 교체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2) 재투자 기준

- 재투자는 투자상품의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거래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기관별·상품별·만기별 분산하여 재투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품별 운용기간, 조기환매 여부 및 수수료 변동 등에 따른 손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9.5 환헤지 정책

환헤지 정책은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 익스포저와 관련된 리스크관리 및 운용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등을 정하여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수립하며, 세부사항은 「환헤지 지침」을 따른다.

10 성과평가

10.1 성과평가 원칙

성과평가는 공제 자산운용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여 신뢰를 확보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자산운용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과평가는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시 설정한 운용기간 및 상품별 기준 포트폴리오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성과평가를 위하여 적절한 벤치마크 지수를 적용하며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하여야 한다.

성과평가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별도의 조직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2 성과평가 주기 및 보고

성과평가는 자산운용 실적을 기준으로 분기, 반기, 연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성과평가의 결과는 중앙회장 및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분기 : 공제사업단장
- 반기 : 리스크관리위원회
- 연간 : 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운용부서는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0.3 성과평가 기준

성과평가에 사용하는 수익률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시간가중수익률, 금액가중수익률, 평잔수익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자산군별 성과평가 기준수익률은 투자자산을 대표하는 시장수익률로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성과평가 기준수익률은 자산군별 투자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구 분		기준 수익률
단기 자산	현금성	·한국은행 기업형 MMDA 수익률
	유동성	·한국은행 정기예금(6개월 미만,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50%) + CP(A1, 91일물) 금리(50%)
중장기 자산	국내채권	·일반·위탁 : KIS채권종합지수 ·구조화 : 국내 AA0등급 회사채(공모) 10년물 금리(2년 평균) + 30bp
	해외채권	·일반·위탁 : Barclays Global Aggregate Index - hedged to KRW ·구조화 : HQM Corporate Bond(Spot, 10Y)(1년 평균) + 30bp
	국내주식	·KOSPI
	해외주식	·MSCI ACWI - unhedged to KRW
	대체투자	·[국내 A0등급 회사채(공모) 5년물 금리 50% + HQM Corporate Bond(Spot, 10Y) 50%]의 2년 평균 + 160bp

11 감사 및 공시

11.1 감사

공제 자산운용의 감사는 중앙회의 「감사규정」 및 「감사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11.2 공시

중앙회는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매 회계연도 결산 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자산운용 주요 결과를 홈페이지(www.8899.or.kr)에 공시한다.

12 의결권 행사

중앙회는 직접 또는 위탁운용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함에 있어 공제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신의에 따라 신중하고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13 자산운용 담당자 행위준칙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운용 관련 제반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며, 공제 자산운용에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된다.
-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은 적절한 연구와 조사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록을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투자를 행함에 있어 투자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와 판단으로 행하여야 하며, 발행회사 등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석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금품,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직무규범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위 의사결정 책임자는 관련자를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